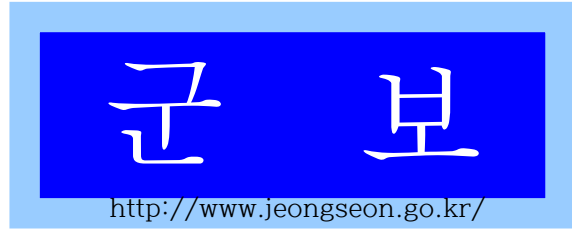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2호 2020. 3. 30.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63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3
- 정선군 조례 제2764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4
- 정선군 조례 제2765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10
- 정선군 조례 제2766호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
- 정선군 조례 제2767호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23
- 정선군 조례 제2768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7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38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30
- 정선군 규칙 제1339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3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60회 정선군의회(2020. 03.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63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

제1조(「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폐지)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자치법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

-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나. 유효기간 만료된 조례 폐지(2016년 12월 31일 만료)

-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0회 정선군의회(2020. 03.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64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도 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u> <u>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u> <u>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u> <u>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u> <u>른다.</u>
<u><신 설></u>	<u>제6조(선정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u> <u>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u> <u>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u> <u>등” 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u> <u>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u> <u>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u> <u>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u> <u>등” 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u> <u>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u> <u>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u> <u>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u> <u>다.</u> <u>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u> <u>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u> <u>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u> <u>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u> <u>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u> <u>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u>

<신 설>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제5조 ~ 제7조 (생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 제안이유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으로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신설 (안 제5조)
- 나.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

제260회 정선군의회(2020. 03.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65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노인의 보건복지 및 위생건강을 증진함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노인 중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령 어르신”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 중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지급기준일”이란 매분기 첫 달 5일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초고령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작·지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초고령 어르신 보건복지 및 위생건강 증진에 필요한 군 소재 목욕 및 이·미용업소(이하 “업소”라 한다)를 파악하고, 해당 업소의 업주(이하 “업주”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초고령 어르신의 효과적 보건복지 및 위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초고령 어르신으로 한다.

③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군 및 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5조(지원방법·기준 및 시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초고령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해당 이용권을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급기준일부터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용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 1명마다 월 1만원으로 한다.
2. 분기별로 지급하며,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3. 지난 분기에 지급받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다시 지급할 수 없다.
4. 이미 지급한 때에는 제4조제3항의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의 해당 분(分)은 별도로 되돌려 받지 않는다.

③ 군수는 주민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대상자에 처음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해당 월부터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이용권의 지급을 처음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이용권을 교부하되, 해당 신청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따라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7조(이용권 사용 및 정산) ① 군수는 업주와 이용권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협약 및 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이용권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④ 이용권을 받은 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서비스 대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그 업소의 주소지 읍·면장에게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이용료로 받은 이용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읍·면장은 제4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청구금액을 업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 또는 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부정사용 또는 청구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 때
2. 지원대상자가 실제 해당 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그 업주와 이용권을 현금으로 주고받은 때
3. 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업주가 제2호에 해당된 때
5. 업주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제9조(기록·관리) 이용권의 수불 및 지급상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1. 군수: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 수불상황부
2. 읍·면장: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이용권 지급상황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서비스 이용권

<앞면>

<뒷면>

____년도 ____분기 NO. _____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권 금 원

정선군
JEONGSEON COUNTY

정 선 군 수

직인

유의사항

1. 목록 및 이·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선군 관내 목록 및 이·미용 지정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기간 : 20 . . . ~ 20 . . .
4. 지급일자 : 20 . . .
5. 지 급 자 : 000행정복지센터 000 (인)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권 사용가능업소

정선군
JEONGSEON COUNTY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지 원 내 용		10,000원/월/분기1회 30,000원을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 (사용기한 - 해당 연도 12월15일까지, 초과비용 본인 부담)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의 안할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기준 1.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 중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2. 목욕, 이·미용권은 정선군내 목욕,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4. 목욕,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 처리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대금 지급 청구서

업 소 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구분	☐ 목욕 ☐ 미용 ☐ 이용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이용매수	매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읍 · 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서비스 이용료로 받은 목욕 및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권 발급대장**
(분기)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일자	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제작매수										
배부매수										
반납매수										
비고										

[별지 제5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illegible]

[별지 제6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대상

(0000년 ○분기)

[illegible]

□ 제안이유

초고령사회로 진입, 매년 고령화 가속으로 노인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르신 목욕, 이·미용 서비스 제공하여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제2조, 제4조)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나. 지원내용(제5조)

-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1명당 월 1만원으로 하며, 이용권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 이용권사용 및 정산(제7조)

- 군수와 협약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 사용하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 업주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당해연도 12월20일까지 청구하며, 읍·면장은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이내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260회 정선군의회(2020. 03.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66호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선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 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군이 설치·운영하는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4. 군이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5. 군이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② 군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수가 주최하는 주요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②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소지자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

④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⑤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에 한한다.)

□ 제안이유

- 가.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치 병역명문가로서 존경을 받는 우대제도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제2조)
- 나. 예우대상자 우대 감면혜택 부여(제3조)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지정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장사시설 사용료

제260회 정선군의회(2020. 03.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67호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환자의 병원치료, 직장인 출근, 학생 통학 등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응답택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상마을”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호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수요응답택시(이하 “응답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도록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3. “사업자”란 군수가 정선군 응답택시 운행사업자 공모계획에 따라 그 신청자 중에서 해당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택시사업자 및 수요응답 면허(등록)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군수가 선정한 사업자의 응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마을 주민을 말한다.
5. “운행정보시스템”이란 군수가 응답택시 운행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의 원활한 교통이용 편의를 위하여 응답택시 운행 및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답택시 운행요금(이하 “운행요금”이라 한다)에서 이용자 부담분 1,000원을 제외한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대상마을 지정) ① 대상마을은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다음 각 호의 마을로 한다.

1.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1가구를 포함한다)
2. 노선버스 운행횟수가 하루 세 차례 미만의 마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 ② 군수는 대상마을을 지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답택시 운행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

다.

③ 군수는 대상마을을 지정하거나 조정·변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이용자 및 사업자 선정) ① 이용자는 자가용이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와 다른 가구 중 직장 출·퇴근, 타 지역 자영업 운영 등의 객관적 사유로 가구원들이 자가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명(疏明)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대상자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초·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그 학생을 이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노선버스가 없을 경우

2. 노선버스가 있어도 그 운행시간이 통학시간과 맞지 않을 경우

3. 해당 학교의 통학버스가 없을 경우

④ 군수는 읍·면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는 응답택시 운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그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해당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새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⑤ 군수는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읍·면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벽·오지 지역 등은 필요할 경우 단체, 개인 등 마을거주 주민소유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협약에 의해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행 및 이용방법) ① 응답택시의 운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이 속해 있는 읍·면 소재지에서 해당 마을까지로 한정한다.

2.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에 제1호의 구간을 운행한다.

3. 운행횟수, 운행방법 등 세부적 운행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사업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콜센터 또는 사업자에게 직접 이용요청을 하고 응답택시 지원 전용카드를 제시하고 개인부담 이용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되 이용자가 탑승한 지점에서 미터기 작동을 시작하고 하차한 지역까지의 구간을 이용자가 제시한 수요응답택시 전용카드로 카드결제기를 통해 미터요금을 결제한다.

④ 군수는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차량이거나 이용자가 아닌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때에는 응답택시 운행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7조(운행확인 및 지원결정)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운행요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단말기(TIMs)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운행요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급) ① 군수는 응답택시별로 운행정보시스템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운행요금에서 이용자에게 지불받은 이용요금을 제외한 비용을 협약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및 선정취소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답택시의 이용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등 부당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이용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정산하여 되돌려 받는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응답택시의 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이용요청을 거부한 때
3. 이용요금을 부정청구한 때
4. 협약기간 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세 차례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때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선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협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후 3년 동안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응답택시 이용과 이용요금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마다 운행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석 후 필요하다면 응답택시의 운행방법 등을 수정·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게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운행요금 및 이용요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및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에 따른 운행조정 등으로 발생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적합한 교통복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 관리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수요응답택시 지원 및 범위 (제3조)
- 나. 대상마을 및 이용자와 사업자 선정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다. 수요응답택시 운행 및 이용방법 (제6조)
- 라. 운행확인 및 지원결정 (제7조)
- 마. 수요응답택시 비용지급 (제8조)
- 바. 이용제한 및 선정취소 등 (제9조)

제260회 정선군의회(2020. 03. 20.)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68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임대 신청 절차) ① (생략)	제7조(임대 신청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대로 임대 여부를 결정하되, 1가구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임대료 등) 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상태, 임차인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를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임대료 등)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업기계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농업기계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임대료 산정 기준 및 감면	<삭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임대료 기준 개정되어 임대사업의 실효성 및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농업기계의 임대료 지역 간 형평성 제고(제9조제1항)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준용

규 칙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3. 13.)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38호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선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른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선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u>
<u><신 설></u>	<u>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6조 제6항에 따른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u>
<u>제11조 (생략)</u>	<u>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u>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정선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정 선 군

정선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정선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선군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세무과 세정담당(☎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정선군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정선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세무과 세정담당(☎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관인생략

정선군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 개정이유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에 대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서식 신설(제11조 ~ 제13조)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3. 13.)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39호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기준) ①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송할 때에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② 신청농가 입회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③ 농업용 굴삭기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다만,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 50%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트랙터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등이상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작운전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임대 신청 절차)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절차를 마친 다음에 출고하여야 한다.

1. 임대 농업기계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보험가입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카드결제, 고지서 납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 등의 납부방법을 통지 하여야 한다.

2. 임대차 계약은 제1호의 납부방법에 따른 임대료 납부 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기재 하여야 하며, 출고할 때에는 농업기계 임차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제4조(임대 우선순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순서에 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70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농업기계 미보유 농가
6. 농업기계 보유농가

제5조(교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안전교육 : 2년 1회이상
2. 농업기계 조작교육 : 최초 임차하는 사람
3. 수시교육 : 자주식 농업기계 및 조작이 미숙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임대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승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임대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임차인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4. 임대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8조(임대료 세입조치) 농업기계 담당부서에서는 사전 예약관계, 기상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 감안하여 임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1. 임차하려는 사람은 농업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 등의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담당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임대료를 입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징수 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대하여 간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장비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출고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확인 및 정비 개소 확인
3. 점검·정비 및 사용가능 장비 및 구입확보 기종 사전 계획 수립

제10조(농업기계 사후관리)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구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때에는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정선군수		주 소	
		성명(성별)	(남, 여)
		전화번호 ☎	H·P
임대차 농업기계			
농기계명		수 량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대료	W 원		
농업기계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ha(일 평)		

임대차계약조건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 사용 후 보관할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경우)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한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청소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고장 유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정선군수 인 또는 서명

임차인 인 또는 서명

주소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033) 562-1222 홈페이지 <http://js.amlend.kr>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명(성별)	(남,여)	생년월일	
	전 화		휴대폰	
신청기종			규격 및 모델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임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작업면적	ha(논 : ha, 밭 : ha, 기타 : ha)			
작업내용				
임 대 료 납 부 액	원	감면(면제) 신 청 액	원	
감면(면제) 신청 사유				
비 고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면제)승인서

신 청 자	주 소			
	성명(성별)	(남,여)	생년월일	
	전 화		휴 대 폰	
신청기종			규격 및 모델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임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작업면적	ha(논: ha, 밭: ha, 기타: ha)			
작업내용				
감면(면제) 신 청 액	원		감면(면제) 승 인 액	원
감면(면제) 승 인 사유				
비 고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의 감면(면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귀하

□ 제정이유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대기준(제2조)

-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 농업용 굴삭기 임대 시 면허 의무화
- 트랙터임대 시 조작운전 교육기간 의무화.

나. 임대 우선순위(제4조)

- 여성농업인, 70세이상 고령농업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농업기계 보유하지 않은 농가 순

다. 교육(제5조)

- 농업기계 안전교육 2년 1회이상 의무화
- 농업기계 조작교육 등